



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
심 사 보 고 서

심 의 안 건

1.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
#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51호
----------	------

2026. 4. 30.(목)  
의안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일 : 2026. 4. 27.
- 나. 제 안 자 : 금산군수
- 다. 회 부 일 : 2026. 4. 27.
- 라. 상 정 일 : 2026. 4. 30. (제337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김창식 산업환경국장
  - 검토보고 : 윤주현 전문위원
  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고령화와 인구감소,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기본소득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5조, 제6조)

- 시범사업의 시행(안 제8조)
- 지급액 및 지급방법,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(안 제9조, 제10조)
-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(안 제11조~제1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‘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’ 공모에 금산군이 선정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, 선정 이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그러나, 공모사업 선정시 2027년까지 412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, 군비 부담액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그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명, 찬성 5명, 반대 0명)

### 7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없음